



전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19. 3.

전 주 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공통사항, 부서별)」은 우리시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 할 수 없으며,
 -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 예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전주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통사항)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p>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p> <p>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하는 정보</p> <p>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p> <p>4. 지방세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p> <p>5.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p> <p>6. 통계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p> <p>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p>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p>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p> <p>2. 을지 연습,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p> <p>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p>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p>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p> <p>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p>	
법 제9조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p>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p> <p>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p> <p>3.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기밀을 요하는 자료</p>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p>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p> <p>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5. 소속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전주시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인 및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2.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2.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3.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전주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부서)

※ **공통사항 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규정 (비공개 근거)	비고
감사담당관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총무과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등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세정과 (구·동 포함)	○ 지방세 과세 관련 자료 (개인 및 법인 과세 자료가 아닌 전반적인 과세 현황 등 통계자료는 공개 가능) ○ 납세자의 과세정보 및 인적사항 ○ 지방세관련 소송관련자 인적사항 ○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명단 및 조사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및 제132조	
	○ 지방세 체납 또는 결손자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자료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제11조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규정 (비공개 근거)	비고
생활복지과 (구·동 포함)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정보 - 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복지사업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 가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생태도시 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가능. 다만,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의회사무국	○ 비공개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72조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보건소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관리 및 감염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 - 개별 환자 정보를 제외한 지원사업 현황, 예방사업 추진계획 등 일반적인 자료는 공개 가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구청 경제교통과	○ 무단방치차량 사범처리 수사내용 등	특별사범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조	